

전주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20가단1418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길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김철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미경

변 론 종 결 2021. 9. 14.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229,692원 및 그 중 90,936,762원에 대하여 2020. 4. 20.부터 2020. 9. 23.까지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9.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03,178,5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은 2016. 2. 16. 피고 A이 D은행 전주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돈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7. 2. 13.까지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남편 피고 B은 위 보증계약상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피고 A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 A이 위 계약에 따른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면 최종보증료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매년 원고에게 보증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보증기한이 2020. 2. 13.까지로 변경되었으나 결국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20. 4. 20. 대출원리금 90,936,76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피고 A은 보증료를 2020. 2. 13.까지만

납입하여 2020. 2. 14.부터 2020. 4. 19.까지 보증료 미납에 따른 위약금 292,930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A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2.자로 시아버지인 피고 C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9. 9. 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841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19. 3. 4.자 채권최고액 250,800,000원, 근저당권자 D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그 후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9. 11. 27.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54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9. 2.경 시가는 277,000,000원이고 2021. 4. 23.경 시가는 357,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대위변제금, 위약금 합계 91,229,692원 및 그 중 보증채무이행금 90,936,76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송달일인 2020. 9. 23.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권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당초 보증기한인 2017. 2. 13.을 매년 보증기한을 1년씩 연장하여 2020. 2. 13.까지 연장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2020. 4. 20. 원고가 D은행에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여부 및 보전의 필요성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D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사해행위 당시 피고 A이 이 사건 부동산과 8,653,000원 상당의 자동차 외에 별 재산이 없고, 소극재산으로 D은행에 이 사건 대출채무 외에 137,9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A은 무자력임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함으로써 이를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어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의 관계,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후 2개월만에 이를 다시 매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피고의 악의 추정이 깨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방법 및 범위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4.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57,000,000원이고,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06,677,78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은 150,322,220원(=357,000,000원 - 206,677,780원)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7. 15. 기준 원고의 채권액 103,178,533원¹⁾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103,178,5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103,178,5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은영

별 지(부동산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동[도로명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2층 호 84.968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 41794.4㎡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1794.4분의 49.3732

- 이 상 -

1) 2021. 7. 15.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은 ① 금 91,229,692원 및 ②금 90,936,762원에 대한 202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 2020. 9. 23.(157일)의 연 8%의 이자 3,129,221원 , ③ 2020. 9. 24.부터 2021. 7. 15.까지(295일)의 연 12%의 이자 8,819,620원 등 합계금 103,178,533원임